창업휴학 신청 안내

1. 창업휴학: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, 2년(4학기)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(휴학 가능 학기 수 미 포함)

2. 자격요건

-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교육과정(정규교과)을 3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
-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(공동대표 포함)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※ 단, 창업휴학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 창업기준일: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혹은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
- 3. 신청기간: 미등록 휴학 및 등록금 납부 후 휴학에 해당하는 수업일수 14일 이전에 신청 및 서류 제출 완료해야 함
-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: 직전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 수업일수의 3/4
- 미등록 휴학의 경우: 직전학기 수업 종료일로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업일수1/4 서
-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학기 직전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휴학연장 신청서를 제출

4. 휴학절차:

- 매학기 구비서류 작성 후, 소속학과의 학과장님 의견과 서명을 취득하여 창업교육센터 (온/오프라인) 제출 → 작성서류 바탕으로, 창업교육학사제도 실무위원회 안건 상정 및 승인 →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승인 → 창업휴학 승인 (매학기 창업교육학사제도 위원회 개최됨으로 인해, 매학기별로 1학기씩 신청 가능)
- 5. 구비서류: 창업휴학원, 창업계획서, 서약서,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창업사실 증빙 서류 (공동창업자의 경우, 공동창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(예, 주주명부 등))

6. 주의사항

-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전공(복수전공, 부전공, 연계전공 포함) 관련분야로 한정

7. 허용 제외 대상 업종

코드번호 세세분류
K94~66
L68
155~56
91291
9112
9124
96
-

※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<u>www.kostat.go.kr</u> 참조)

창 업 휴 학 원

1.	소속										
	단과대학	:		학과	:			전공	:		
	학번	:		성명	:						
	현주소	:									
	<u> </u>	: . .	LO 레파카	(1	₹ \ ∩} 7]		,			
2.	장업장태 창업(예정) '		}업 예정자 :	() 년	창업자	월	(.)	일	
3.	휴학기간	:	20	년		월		일부터	-		
			20	년		월		일까지		(1 학기)	

「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」

제50조(휴학절차) ①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창업휴학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도심사를 거쳐야 한다.

제52조(휴학기간 및 휴학연장) ② 창업휴학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총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
- * 첨부서류 : 1. 사업(창업)계획서
 - 2. 사업자등록증 사본(창업자)
 - 3. 기타 창업 준비 및 창업에 필요한 서류
 - 위 규정에 의거하여 창업휴학을 하고자 원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성 명: (인)

아주대학교 총장 귀하

1. 사업자등록 사항

상호명			등록법	번호								
대표자			개업연원역	일(예정)								
**창업아이템 설명(간단하게 서술하시오)												
2. 창업교육	과정(정규과	목)이수 여부	부									
□ 이수	과목명			이수학기	7]							
□ 미이수	<u>(※미이수인 학신</u>	Ŭ의 경우 하단의	3, 4번을 기재	하시기 바랍니								
3. 사업시작	동기 및 바	 } }										
(※사업시작 동기		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	_							
	X 110 11 11 11 1	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<i> </i>	<u> </u>								
4 21010 7	r1 ~1 —1 —1 —1											
4. 사업을 준												
<u>(※사업을 준비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)</u>												

[별지2] **창업계획서**(양식)

창 업 계 획 서

학 과			전 공	2		
학 번			이른			
창업상태	창업예정자	()	창업자	()

◎ 세부사항

구분	상세
업종 및 사업개념	
전공과의 연계성	
세부 추진 일정	

구분	상세
매출 실적 (창업자에 한함)	
사업 추진 실적 (창업자에 한함)	
향후 사업 진행 계획 (창업자에 한함)	
◎ 학과장 의	
	20

<u>성 명 : (인)</u> 학과장 : (인)

창업휴학 관련 확인서

1.	소속											
	단과대학	:		학과	:			전공 :				
	학번	:		성명	:							
	창업상태	:	창업 예정자	()	창업자		()				
2.	창업(예정)일	Ī	:		년		월		일			
3.	휴학기간		: 20	년		월		일부터				
			20	년		월		일까지		(1학기)	

「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기준」(개정 2019.02.22.)

제4조(창업휴학의 기간 및 연장)

- ① 창업휴학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총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- ②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휴학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'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'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7조(대상학년 및 자격요건) 준비되지 않은 학생의 창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휴학이 가능하다.
 - 1.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창업교육과정(정규교과)을 3학점 이상 이수하거나, 이에 준하는 창업 준비과정을 [별지1]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학생
 - 2.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(공동대표 포함)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. 단, 실질적으로는 공동창업이지만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'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'의 심의를 통하여 공동대표로 인정된 경우는 가능함

※ 주의사항

- 신청한 창업휴학 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창업휴학 취소처리 가능(일반휴학으로 변경됨)
- 창업휴학 취소처리에 대한 불이익은 해당 학생이 일체 책임질 것
- 사업자등록 시 반드시 창업교육센터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것
 - 위 규정에 의거하여 창업휴학 신청기간동안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성 명: (인)

아주대학교 총장 귀하